예산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검 토 보 고

□ 제안이유

 지방자치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군의회회의규칙을 제정 시행중에 있으나 그동안 의회회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능 률적인 회의운영을 도모코자 함.

□ 주요골자

- 의원발의 또는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 경우 회기개시일 7일전까지 의안이 접수될 수 있도록 명시코자 함. (안 제20조제4항)
- 의원회는 위원회에 접수된 의안이 해당의원에게 3일전까지 배부되도록 정 하고자 함 (안 제20조제3항)

□ 참고사항

- 지방자치법 제63조
-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21조

□ 검토의견

본 개정 규칙안은 의원이 발의 또는 군수가 제출한 의안을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할 때 회기개시일 7일전에 접수된 의안에 한하여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, 위원회는 발의 또는 제출된 의안이 의사일정 시작 3일전까지 의원에게 배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없도록 본 규칙에 명시하여 의사진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보다심도있는 의안심사가 될 수 있도록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규칙개정의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됨.